

[]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[] 승인
[]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[] 변경승인 신청서

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*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승 인 : 30일 변경승인 : 10일
*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 :)		
설립예정	명칭		
	종류(1종/2종)	유형	
	위치	개관연월일	
	규모(부지/㎡)	규모(건평/㎡)	
	소장자료(점)	소요 예산(천원)	
	착공예정일	준공예정일	
*변경사항	당 초		
	변 경		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·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([]승인 []변경승인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

귀하

첨부 서류	<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> - 사업계획서 1부 - 토지의 조서(위치·지번·지목·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, 소유자의 성명·주소, 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저당권·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,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·주소를 적은 것) 1부 - 건물의 조서(위치·대지지번·건물구조·바닥면적·연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, 소유자의 성명·주소, 전세권·저당권·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,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·주소를 적은 것) 1부 - 위치도 1부 - 개략설계도 1부 -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<변경등록 신청 시>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1. 신청인 :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.
2. 종류 및 유형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위치 :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.
4. 소장자료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·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5. 변경사항 :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.(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)

처리절차

